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5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51)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임.

## 3. 주요내용

- 설치목적
  -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기회 마련 및 생존권 보장
  - 지원을 통한 거리가게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

#### ○ 재원조성

- 일시도로점용료  
(도로법 제66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8호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)
- 적치물 및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 
(도로법 제72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7호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)
-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 
(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, 제2호에 따른 과태료)

#### ○ 기금용도

-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철거 및 정비되거나 자진 정비한 운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
- 거리가게 운영자 소양교육 및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 지원비
-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### 5. 검토보고

-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

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,

-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생존권을 보장 및 지원 자금 지급을 통해 관내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기금이며,
- 기금 조성액은 1억 3,651만원이며, 비용자성 사업비 4,434만 5천원, 용자성 사업비 6천만원, 예치금 3,216만 5천원임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운용계획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노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때 재취업과 직업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기금관리,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에 근거하여 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과 기금사용 용도는 맞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코로나19로 인해 청결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서에서는 거리가게 위생·청결 상태도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, 신규 발생 거리가게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